

(우)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이촌동) [http://www.kma.org] / 전화(02)6350-6571/ 전송(02)790-8911
보험국 보험국장 김기성[6574] 보험정책팀장 백영기[6581] 팀원 김용덕[6571]/E-mail :kma6350@naver.com

문서번호 대의협 제821-9184호

시행일자 2023. 10. 23 .

수 신 수신처 참조

참 조

제 목 코로나19 자율시정 관련 추가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의협 제 821-8947호(2023. 10. 17.)와 관련입니다.

3. 상기호로 기 안내한 사항 중 “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와 관련하여 회원들의 혼란과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소속회원들에게 회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19 진료비 청구건에 대해 복지부의 부당 청구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확대조사의 대상은 ①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 ②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③출국목적 진단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 등 3가지 항목이며, 이는 우리협회가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방문확인 및 현지조사를 중단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자율시정 방식을 통해 행정처분 없이 부당금액에 대해서만 환수하는 방향으로 결정된바 있습니다.

○ 위 내용 중 “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 항목과 관련하여 백신접종 당일 타 상병(고혈압이나 당뇨 등 다른 질환)을 동시 진료시 진찰료 청구는 가능한 것이기에 부당 청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접종 당일 다른 질환 진료는 하지 않고 접종만 했을 경우 진찰료 별도 산정이 부당청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대한의사협회

“국민의 건강과 행복, 의협이 함께 합니다”

수신처: 각 시도의사회장, 대한개원의협의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